



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(안)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261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27. 
제출자 : 달성군수 

1. 제안주문

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(2023년~2026년)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(안)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제2항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 제3항

3. 주요내용

가. 계획기간 : 2025년 1월 ~ 2025년 12월(1년간)

나. 내용

- 목표 : 든든한 행복복지 실현으로 군민이 빛나는 달성
- 구성체계 : 2개분야, 9대 추진전략, 41개 세부사업

사회보장전략(27개 사업)	지역발전전략(14개 사업)
아동맞춤형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	사회보장급여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
안전하고 스마트한 복지도시 구현	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
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복지 실현	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
자립과 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	사회보장 인프라 확충
전문성과 협력으로 전달체계역량 강화	

- 수립내용 : 분야별 추진전략,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수립

4. 계획(안) : 붙임참조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」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(이하 "지역사회보장계획"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[개정 2017.3.21] [[시행일 2017.9.22]]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역사회보장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,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·군·구 의회의 보고(보고의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)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7.3.21] [[시행일 2017.9.22.]

□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」

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도 및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22., 2017. 9. 19., 2022. 1. 25.>

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19.>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·군·구 의회에 대한 보고(보고의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)를 거쳐 확정된 시·군·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,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(이하 "시·도사회보장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와 해당 시·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·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,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